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4나190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4나190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7 선고 2023가단53800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변론 종결 2024. 9. 3.

판결 선고 2024. 10. 22.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7. 선고 2023가단538003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와 B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J건물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8,265,4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265,4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89,349,032원을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9,349,032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복규

판사오연정

판사안승호